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

일시 : 2007년 10월 12일 (금요일) 13:00
장소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제주발전연구원
주관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후원 : KBS, MBC, KCTV, JIBS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제주타임즈
 제주의 소리, 미디어 제주

식 순

◎ 개회식 13:00-13:20

- 13:00 개회사 - 고충석 (제주대 총장)
- 13:10 격려사 -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 13:20 축사 - 양대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토론회 13:30-17:10

사회 - 한삼인 (제주대 법학부 교수)

제1주제 (13:30-14:20) 법학전문대학원 추진현황과 전망

- 발표 : 권영호 (제주대 법정대학장)
- 토론 : 김우남 (국회의원)
 - 여창수 (KCTV 보도국 차장)
 - 김부일 (KBS 심의위원)
 - 현창국 (제주일보 편집부국장)
 - 김민국 (제주대 총동창회 사무총장)

제2주제 (14:30-15:20)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 · 목표와 교육과정

- 발표 :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교수)
- 토론 : 강창일 (국회의원)
 - 고태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강문원 (변호사)
 - 강석창 (JIBS 보도국 차장)
 - 원대은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협회장)

COFFEE - BREAK

제3주제 (15:30-16:20)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적·물적 시설 준비상황

발표 : 이효연 (제주대 기획처장)

토론 : 김재운 (국회의원)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

김광우 (MBC 보도부장)

고창실 (제주대 법학부 총동문회 지도위원)

제4주제 (16:20-17:10)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에 따른 제주지역의 환경변화

발표 : 고희성 (제주대 법정대 교수)

토론 : 성기형 (제주은행 부행장)

강원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철수 (미디어제주 대표기자)

한정훈 (공인회계사)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제1주제

법학전문대학원 추진현황과 전망

권 영 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추진현황과 전망

권 영 호

1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추진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

- 로스쿨(Law School)로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지난 1995년 문민정부 당시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첫 논의를 시작.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각각 서로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건의.
- 참여정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합의된 법률안을 마련.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 대학의 파행적 법학교육을 개선,
 - 법학적성을 갖춘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법률가를 양성함으로서, 법률 이론과 실무지식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 양성 체제를 구축,
 - 또한, 다양한 학문적 배경 위에, 대학원 교육을 통한 여러 분야의 특화된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능력과 국제법 지식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으며,
 - ※ 경영학을 전공한 기업 전문 법률가, 공학을 전공한 지적재산권법 전문가 등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

- 학부과정에서 국가발전을 견인할 기초학문 분야에 우수인재가 배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추진 일정

추진업무	일정	소요기간	비고
○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관보게재, 공포	'07. 7	-	○ 법률 시행은 부칙에 의거, 공포후 2개월 후 시행
○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 및 모의 시험 시행	'07. 7 ~12	7개월	○ 기초연구 완료('06.3~11) ○ 본연구 및 모의시험('07.7~12)
○ 시행령 제정	'07. 9	3개월	○ 법률시행과 동시에 시행령 공포
○ 법학교육위원회 발족, 총 입학정원 결정, 인가심사 기준 확정	'07. 10 ~12	2개월	○ 인가심사기준은 관계부처 및 단체의 의견수렴
○ 인가신청 공고, 신청서류 작성 (대학), 접수, 서류 검토·보완, 심사준비 등	'07.10	2개월	○ 공고 : '07.9월초 ○ 접수 : '07.10월초
○ 인가심사 및 인가대상 대학 예비선정 - 현지조사단 구성, 심사계획 확정, 서면심사 - 현지조사단의 현지심사 -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대학통보 - 이의신청 접수, 검토 - 최종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 예비선정 대학 결정·발표	'07.10 ~'08.3	6개월	○ 40 여개 대학 신청 예상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도입
○ 대학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준비 - 대학별 입학전형계획 개요 발표 -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 교원 임용 및 시설 완비 ○ 인가기준 충족 여부 확인	'08.3~ '08.10	8개월	○ 예비 선정대학들이 개원준비 및 수험생들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입학전형 개요 발표
○ 법학적성시험(LEET) 시행	'08. 8	-	○ MEET, DEET, LEET 동시시행 방안 검토
○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 인가	'08.10	-	○ 개원 4개월전까지 통보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 대학별 입학전형 공고, 전형 실시	'08.11 ~12	-	○ 대학별 접수는 LEET 결과 발표 후 시작
○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09. 3	-	

2

법학전문대학원 설립기준 및 주요내용

□ 총괄표

영역	배 점	배점비율 (%)	평가항목 수	비고
①교육목표	30	3.0	3 항목	
②학생복지	135	13.5	6 항목	
③입학전형	85	8.5	7 항목	
④교육과정	290	29.0	19 항목	
⑤교원	195	19.5	10 항목	
⑥교육시설	125	12.5	14 항목	
⑦교육재정	100	10.0	7 항목	
⑧관련학위과정	40	4.0	3 항목	
⑨현황 및 실적	별도	·	· 항목	
계	1,000점	100(%)	69 항목	

□ 주요내용

○ 학생복지(장학금)

- 총정원 20%이상의 전액장학금 지급 계획 수립
- ※ 총정원 300명의 20%인 경우 60명 * 학비(연) 1400만원, 8.4억원 소요

○ 교원

- 교원 1인당 학생수 : 12인, 300명정원인 경우 25명 소요(실무교원 20%/5명)
- 25인 이상의 연구조교

○ 교육시설

- 독립된 전용건물(6,000m²)
- 법학전문도서관(2만5천종, 4만권이상요구),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통신시설 구비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

○ 교육재정

○ 특성화·교육과정(실무연수프로그램)

- 이수 필요학점 : 90학점 이상
- ①법조윤리, ②법률정보의 조사, ③법문서의 작성, ④모의재판, ⑤실습과정을 포함하여 교과목을 개설
- 특성화연구소 설립(년1억이상 운영비, 4명이상 전임연구원, 4명의 연구조교)

3

제주대학교 설립 필요성 및 경과

□ 설립 필요성

○ 지역발전과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국제금융법률 서비스를 담당할 특화된 인적 인프라 구축
 - 제주지역 인재양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미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서 국제상사 분쟁해결 지역으로 부상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업무중심형 도시로 전환하는데 가장 적합
- 전국 우수인재 확보로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인력풀 구성
 - 정부부처 등 다양한 직역에 우수인재 배출을 통한 대중앙 교섭의 인적네트워크 형성·강화

○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전국 우수인재 유치 및 지역 우수인력의 도외 유출 억제
- 제주지역 우수 인재의 도외 진출 억제로 인한 교육비 절감
-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 유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대학의 경쟁력 강화

-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통한 대학기능 확대와 위상 제고
- 우수 신입생 유치를 통한 대학의 질적 수준 제고
- 제주대학교 졸업생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기회 확대
- 제주지역 차세대 리더그룹의 안정적 확보

□ 추진경과

- 05. 11. 11.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 06. 6. 16. 법학전문대학원 준비사항 점검 및 토론회
- 06. 10.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교과과정 개발 보고서 작성
- 06. 11. 교육과정 수립 보고서 작성
- 07. 2.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 07. 7. 20.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시설 및 교원확충 등)
- 07. 8. 10.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총동창회와의 간담회
- 07. 8. 22.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및 실무지원팀 구성
- 07. 8. 29. 제주도지사(김태환)·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양대성) 공동기자회견
특별자치도청내 지원본부설치 및 도민역량결집강화 프로그램실현
- 07. 9. 28.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회의(의장선출, 장학기금확보방안)

□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추진기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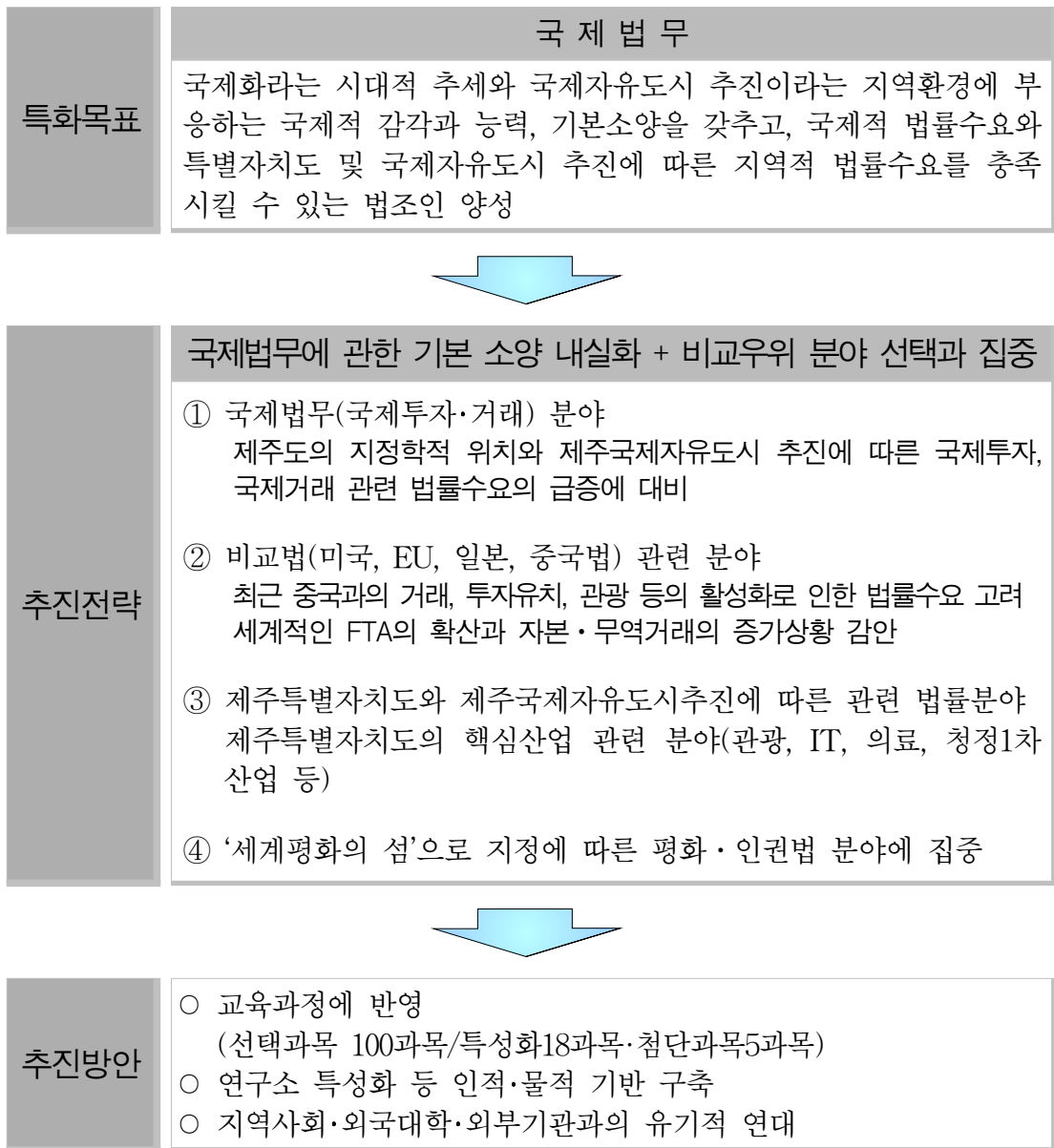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

<p>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대학교총장)</p>	<p>○ 구 성 제주대학교총장, 국회의원, 도지사(총동창회장), 도의회의장, 제주도의회교육분과위원장, 제주도의회의원, 전국회의원, 국제평화재단이사장,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장, 변호사,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제주은행장, 제주대학교 법학과 총동문회장</p> <p>○ 역 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외부 지원 및 협력체계 구성 ◆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제주도민의 역량 결집 ◆ 총동창회와 연계하여 장학기금 조성 및 도내 유치분위기 조성
<p>법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 (위원장 : 총장)</p>	<p>○ 구 성 제주대학교 총장, 원·처·국·단장, 법정대학장, 도서관장, 정보통신원장</p> <p>○ 역 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외부 지원 및 협력체계 구성 ◆ 본부 차원의 로스쿨 추진 총괄 지원 ◆ 법학전문대학원 추진과제 조정 및 대외협력과제 지원 교섭 등
<p>법학전문대학원 추진실무위원회 (위원장 : 법대학장)</p>	<p>○ 구 성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행정학과장, 정치외교학과장, 언론홍보학과장, 법정대학 행정실장</p> <p>○ 역 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준비를 위한 추진과제 실무 집행 ◆ 실행과제별 연구·검토·계획안 작성 및 실무협의 ◆ 본부 지원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시안) 제시 ◆ 기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준비 및 설립을 위한 제반사전 준비

4 제주대학교 추진 방향과 현안

□ 특성화 교육과정

○ 교육목표- 지역화·전문화·국제화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

○ 특성화 법과정책연구소

- 비교법연구센터, 국제자유도시·특별자치도법연구센터, 평화·인권법연구센터, 국제법무연구센터
- 국제법무와 법과정책 학술지 발간
- 중국, 일본 등 10여명의 외국연구진이 공동으로 국제적 연구과제를 수행

○ 특성화 해외실무연수기관

- 미국 - 조지메이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네브라스카링컨대학, 하와이 대학
- 중국 - 중국 執思得 law firm, 路德 law firm, 서북정법대학, 난카이 대학, 해남대학
- 대만 - 국립성공대학, 국립중앙대학
- 일본 - 히로시마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베대학, 류큐대학, 나카사키 대학
- 독일 - 본 대학, 튀빙엔 대학
- 러시아 - 모스크바 대학, 극동대학, 러시아 사회대학
- 캐나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 프랑스 - 루앙대학
- 호주 - 태즈매니아대학

○ 특성화 국내(도내) 실무연수기관(양해각서 체결 추진중)

-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은행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제주지방변호사회

□ 교육시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6,000m²이상의 전용공간 확보

→ 현재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정보검색실 등 2,263㎡(38%) 자체 확보

교원 확충 - 법학 전임교원 현황 : 16명 (※ 4명 충원 중)

직 명	성 명	전 공 분 야	최 종 학 위	비 고
교 수	윤양수	행정법	건국대(법학박사)	
교 수	한삼인	민법, 환경법	동국대(법학박사)	
교 수	양석완	상법, 민사소송법	고려대(법학박사)	
교 수	김부찬	국제법, 법철학	부산대(법학박사)	
교 수	고호성	사회·경제법	서울대(법학박사)	
교 수	권영호	헌법	독일 마인쯔대(법학박사)	법정대학장
교 수	송석연	국제거래법, 지적재산권법	중앙대(법학박사)	
부교수	김상찬	민사법, 국제사법	건국대(법학박사)	
부교수	김창균	형법	고려대(법학박사)	
조교수	김여선	국제경제법	중국 무한대(법학박사)	법학부장
조교수	조은희	가족법	베를린훔볼트대(법학박사)	
조교수	표명환	헌법	독일 쾰른대(법학박사)	
부교수	김현수	형사소송법	한양대학교(법학사)	법조실무 교원
부교수	하승수	민사소송법, 조세법	서울대학교(경영학사)	법조실무 교원
조교수	홍석모	국제거래법	Syracuse University(J.D.)	법조실무 교원
부교수	오창수	지적재산권법	경희대학교(법학석사)	법조실무 교원

현안

1. 교육재정

-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을 위한 법학관련 연구소 설립 및 운영비 1억원 이상 확보
 - ※ 연구프로젝트의 수주연구비 및 연구원, 조교, 행정요원 등에 지급되는 인건비를 제외하여 1억원이상 연구소 운영비를 마련토록 요구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

- 안정적 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연구소 운영기금(20억원 이상) 마련 필요
- 재학생 20%이상 등록금 전액면제 장학생 선발제도 마련
 - ※ 장학금 총액으로써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학생 비율로 20%이상을 요구
 - 장학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 장학기금 조성(100억원 이상) 필요
- 법정요건상의 연구인력 및 연구조교 확보
 - ※ 25명의 연구조교(월급여 50만원 이상)와 4명의 유급연구원(최저임금보장 및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을 고용 요구
 - 매년 2억 이상 인건비 확보 필요

2. 교육시설- 단독건물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국책과제 수행을 위한 공간마련 등 대학내 시설공간 절대 부족

- ※ 필수시설 면적 : 최소 6,000m² 이상 확보 필요
 -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및 정보통신시설
 -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정하는 강의실, 행정실, 교수연구실 등 교육기본시설

§ 주요 추진 국책과제 현황 : 총218억 2,600㎡

【지방기술혁신과제 78억원 500㎡, 지역연고사업 40억원 50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제주센터 100억원 1,600㎡】

5

협조 사항

□ 특별자치도의 강력한 의지 천명 및 도민 역량결집 지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는 대학발전뿐만 아니라,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의 미래와 직결되는 도민의 자존심 문제로서 제주대학교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 자치도 및 도내주요기관과 대학간 로스쿨 유치 실무지원 및 협의를 위한 협의

체 공동 구성·운영

- ▶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및 의장, 공동 기자회견('07. 8.29) 의지 반영
- ▶ 공동성명서 발표 및 관계기관 건의문 제출

법학전문대학원 전용공간 확보 지원

현재 대학내 시설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어, 관계기관의 일부 보유시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 ▶ 도내 관련기관의 유희시설에 대한 유·무상 임대 협조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

제주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진학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국제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 등 로스쿨 유치에 필요한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 ▶ 도·내외 기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설득
- ▶ 도·내외 기업 및 관련기관 추천

실무교육연수 협약 체결

로스쿨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관련 실무기관의 연수가 필요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교육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도·내외 관련기관과의 실무연수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 도외기업 및 관련기관에 대한 섭외 및 추천
- ▶ MOU 체결지원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

□ 특성화 연구소의 공동운영 및 프로젝트 수행

제2주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목표와 교육과정

하 승 수

제주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특성화, 교육과정, 입학전형, 학생복지에 대하여*

하승수(제주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변호사)

<요 약>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수립에 있어서는 “단위 대학교의 건학이념”, “지역 사회 등 외부환경·여건”, “단위 대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제주대학교는 2005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을 추진하면서 세미나,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대학구성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목표를 수립해 왔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를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자 함.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와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 “진리·정의·창조”라는 제주대학교 건학이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 ①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시대적·지역적 법률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과 국제법무에 관한 깊이있는 이론적 지식 및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적 법조인을 양성하며,
- ② 법에 관한 학술의 심오한 탐구와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여 세계화·지방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학교육의 세계화 및 전문화”와 “법학교육의 지역화”를 동시에 지향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 이 자료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실무위원회에서 그동안 집단적으로 작업한 내용을 발표자가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혀둠.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양성하고자 하는 법조인의 상을 다시 한번 강조 하면 아래와 같음.

- ① 진리를 탐구하고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조인
- ② 건전한 법조윤리관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며 국민에 봉사할 수 있는 법조인
- ③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창조적 능력을 갖춘 법조인
- ④ 국제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법률수요와 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지역여건에 따른 법률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과 국제법무에 대한 깊이있는 이론적 지식 및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적 법조인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위와 같은 법조인을 양성하여

- 기존의 법조인 진출 경로(법원, 검찰, 송무 중심의 변호사)뿐만 아니라, 국제법무와 관련된 국·내외 로펌 및 기업, 국제기구 등으로 졸업생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임. 특히 국·내외에서 경제자유구역, 경제특구 등의 확산에 따라 그와 관련된 법률수요가 확대될 것이므로 관련된 기관, 기업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의 민간·공공 법률수요에 부응하여 졸업생들이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및 관련 핵심산업, 평화의 섬 등과 관련된 도내·외의 기업·민간단체·공공기관으로 진출하여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한편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성화 목표 및 전략을 갖추어야 함.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그동안 학·내외에 걸쳐 의견수렴을 하여 “국제법무”를 특성화 목표로 설정하였음(2007년 8월 학·내외를 대상으로 교수, 학생, 기업, 제주특별자치도청, 도의회, 기업, 시민단체·언론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분야로 국제

법무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2%가 “적절” 또는 “매우 적절”이라고 응답하였음).

	국제법무
▶ 특성화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라는 시대적 추세와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지역환경에 부응하는 국제적 감각과 능력, 기본소양을 갖추고, 국제적 법률수요와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지역적 법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조인 양성 ○ 이는 국제화, 첨단화를 통한 동북아거점대학으로의 도약이라는 제주대학교의 발전전략에도 부응하는 것임



	충실한 기본소양 + 선택과 집중
▶ 세부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지역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제법무에 관한 기본소양을 충실히 쌓음. ○ 그와 동시에 지역환경과 대학여건을 감안하여 비교우위를 점할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세부전략을 추진함.



▶ 실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에 반영(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등) ○ 연구소 특성화 등 인적·물적 기반 구축 ○ 지역사회, 외국대학, 외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	---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위와 같은 교육목표 및 특성화목표를 반영하되,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편성되어야 함. 교육과정은 기본 법학과목을 토대로 삼고 기초법학·인접과목, 전문법학과목, 실무기초과목을 유기적으로 조합하는 형태로 구성함.

○ 법령에서 필수과목은 35학점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실무기초과목 11학점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론,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법률실습)과 기본 법학과목 24학점(헌법입문, 행정법 일반, 민법 일반, 계약법, 민사소송법, 형법총론, 형사소송법, 상법 일반)으로 구성함.

- 선택과목의 학점수가 230학점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여야 함. 그러나 전임교원의 수, 전임교원 1인당 주당 6시간 이내로 되어 있는 강의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에 어려움이 있음. 현재의 여건속에서도 최대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특히 특성화분야인 국제법무와 관련해서는 국제인권법, 국제조직법, 국제자유도시와 공법, 국제자유도시와 사법, 국제거래법, 국제계약실무, 중국통상법, 국제투자법, 중국투자법, 국제경제법, 국제형법, 국제민사소송법, 국제토지거래법, 국제조세법, 국제노동법, 국제운송보험법, 국제해양법, 경제특구법의 18과목, 54학점을 개설할 예정임.
- 입학전형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따라 학부성적, 외국어능력, 적성시험을 기본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음.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심사기준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보다 구체화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한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으로 정원의 5% 정도를 배려할 예정임.
- 학생복지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이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액장학금 기준으로 전체 재학생의 20% 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함.

I.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1. 법률 및 심사기준 연구상의 교육목적, 교육이념, 교육목표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학술진흥재단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분야 설치인가 심사 기준 연구』^{*)}용역(이하 “심사기준 연구”라고 한다)^{**}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적,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음.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법률의 틀 내에서 교육목표를 수립하여야 함.

<표 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적, 교육이념, 교육목표

분류	내용
교육목적	-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 - 법에 관한 학술 및 응용방법의 발전
교육이념	-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 -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법학의 학술탐구와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
교육목표	①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 ② 건전한 직업윤리관 ③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 ④ 법에 관한 학술의 심오한 탐구와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

** 학술진흥재단,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분야 설치인가 심사 기준 연구』, 2006.6, 16쪽에서 인용

* 아직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기준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기준에 공개되어 있는 학술진흥재단의 『심사기준 연구』에 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음을 밝혀둠.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

- 『심사기준연구』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각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수립에 있어서는 “단위 대학교의 건학이념”과 “지역사회 등 외부환경·여건”, “단위 대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심사기준 연구』에서는 교육목표와 특성화전략이 연계되는 것도 상정하고 있음.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교육목표 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들

(1) 제주대학교의 건학이념

- 제주대학교는 1952년 제주도민의 뜨거운 염원에 의해 제주도립 초급대학으로 인가되었고, 1955년에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고 1962년에 국립대학으로 이관되고 1982년 국립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 또한 제주대학교는 설립 이후에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부족한 대학운영경비를 모금하는 활동을 시도하였으며, 대학발전기금 조성, 의과대학 설립 및 대학병원 건립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기관·단체·도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받으면서, 성장·발전해 왔음.
- 이처럼 제주대학교는 제주지역 고등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으며, 제주도민들의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염원을 실현해 온 대학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제주대학교는 지역내의 유일한 국립종합대학으로서 21세기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사회를 창조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데 지표가 되고자 교훈을 「진리, 정의, 창조」로 설정하고 있음.
또한 제주대학교 학칙 제2조에서는 제주대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하여 “우리 대학교는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상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교수·개발함과 아울러 독창력과 협동정신이 풍부한 지도자적인 인격을

도야하여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지역여건 :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세계평화의 섬 등

○ 제주도는 2002년부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2006년 7월 1일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음. 아울러 정부는 2005년 1월 27일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선포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지향하고 있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해 4+1의 핵심산업(관광, 청정1차산업, 의료, 교육,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두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제도 구축하고 있음.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금융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센터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법률전문가 및 조세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음. 또한 국제금융센터가 필요로 하는 법률전문가는 영어구사능력, 국제계약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함.

또한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국책사업으로 제주 대정읍 지역에 제주영어전용타운을 추진하고 있음. 2010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제주영어전용타운에는 12개 초·중·고교가 들어설 예정임. 이러한 영어전용타운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도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

법학전문대학원 등 다양한 고등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들이 필요함.

이처럼 중앙정부의 지원아래에 제주지역에서는 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세계평화의 섬 추진과 연계된 여러 대형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과 관련하여 법률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의 설립필요성이 절박해지고 있음.

- 아울러 제주도의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함. 제주도 이외에도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 광양, 부산·진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 상하이의 푸둥지구 등에서도 경제특구가 추진되고 있음.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이러한 경제특구중에서 국내에서는 선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경제특구를 통한 투자유치가 국내 및 아시아지역에서 계속 확산·추진될 것이므로 관련된 국내 및 국제적 법률수요도 증가할 예정임.

(3) 제주대학교의 교육여건

-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고등교육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이에 제주대학교는 『제주대학교 종합발전계획(2001-2010)』을 마련하고, “제주대학교의 성공가능 분야를 찾아내어 집중 공략하는 틈새 전략, 대학을 둘러싼 지역사회, 국가 모두를 고객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위한 고객지향전략, 대학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 타 대학 등과의 적극적 연합을 모색하는 전략적 연합, 대학의 강점 교육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는 특성화 전략, 대학의 이미지 제고 전략 등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음 이를 통해 제주대학교는 “태평양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 거점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비전을 지향하고 있음.
- 제주대학교는 국제화를 지향하면서 외국인 학생들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 특히 중국 학생들의 증가가 눈에 띄는 상황임.

<표 2> 제주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현황(2007년 현재) (단위 : 명)

구분	중국	아시아권(일본, 대만 등)	그 외(미국, 유럽 등)	계
학부	57	14	3	74
대학원	42	35	8	85

<표 3> 제주대학교 외국인 학생 변화추이(2004-2007) (단위 :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학부	16	24	34	74
대학원	41	48	54	85

- 제주대학교는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사업), BK21사업 등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특히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사업)에 6개 사업단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는 등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 또한 NURI사업단중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법무서비스 인력양성사업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는 법학부를 포함한 법정대학소속 4개 학과(부)가 참여하고 있음.
- 이러한 제주대학교의 전체적인 발전방향과 교육여건도 교육목표 수립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3. 교육목표의 수립과정

- 제주대학교 법학부는 2000년부터 국제법무전공을 두고, 국제화·정보화라고 하는 시대적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한 “법학교육의 전문화”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인한 거점 국립대학교로서의 위상에 맞는 “법학교육의 지역화”를 지향해 왔음.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

○ 제주대학교는 2005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을 추진하면서 2006. 2. 17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범도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목표수립을 위한 세미나, 간담회 등을 열면서 지역사회, 대학구성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음.

○ 또한 2007년 8월에는 학내·외를 대상으로 교수, 학생, 기업, 제주특별자치도청, 도의회, 기업, 법조계, 시민단체·언론에 걸친 설문조사(360부 수거)를 실시하여 교육목표 및 특성화 목표 수립을 위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검증절차를 밟았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양성하여야 할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 “법적분쟁 해소를 위한 지식과 능력”,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 “풍부한 교양·인간과 사회에 대한 애정과 이해”, “건전한 직업윤리관” 순으로 응답함. 또한 지역 및 대학여건을 감안한 교육목표 설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여건”, “제주대학의 현실적 교육여건”, “거점 지방국립대로서의 제주대학교의 건학이념” 순으로 중요시해야 한다고 응답함.

교육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학내외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요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방향에 맞추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요구를 교육목표 속에 담아 내었음.

○ 한편 위와 같은 토론회 개최 및 설문조사 추진과 함께, 총장, 처장 등 대학관리자와의 면담, 학내구성원과의 면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여 그 결과를 교육목표에 반영하였음.

4.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를 아래와 같이 수립함.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와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 “진리·정의·창조”라는 제주대학교 건학이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 ①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시대적·지역적 법률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과 국제법무에 관한 깊이있는 이론적 지식 및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적 법조인을 양성하며,
- ② 법에 관한 학술의 심오한 탐구와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여 세계화·지방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학교육의 세계화 및 전문화”와 “법학교육의 지역화”를 동시에 지향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양성하고자 하는 법조인의 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아래와 같음.

- ① 진리를 탐구하고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조인
- ② 건전한 법조윤리관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며 국민에 봉사할 수 있는 법조인
- ③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창조적 능력을 갖춘 법조인
- ④ 국제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지역여건에 따른 법률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과 국제법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적 지식 및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적 법조인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위와 같은 법조인을 양성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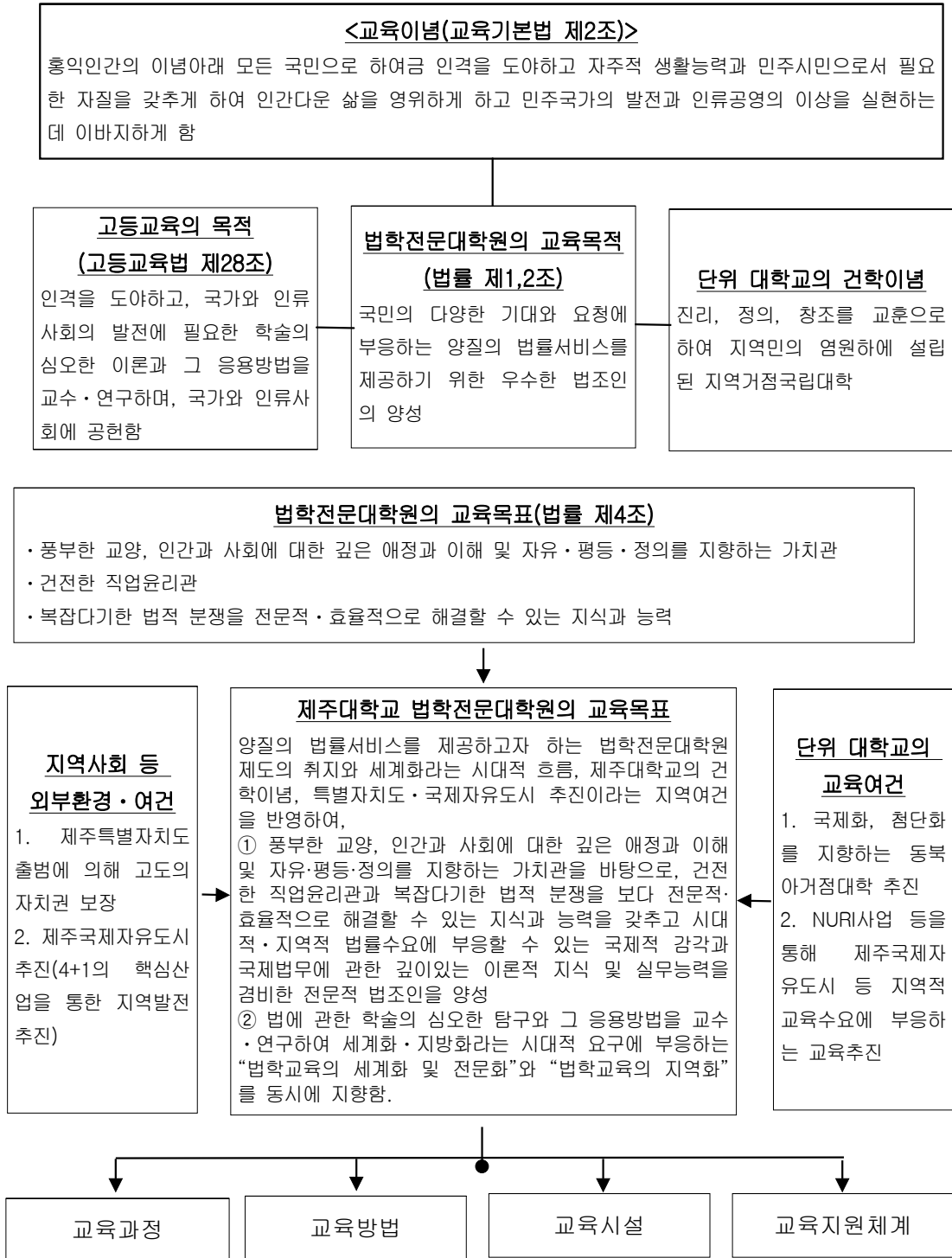
- 기존의 법조인 진출 경로(법원, 검찰, 송무 중심의 변호사)뿐만 아니라, 국제법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

무와 관련된 국·내외 로펌 및 기업, 국제기구 등으로 졸업생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임. 특히 국·내외에서 경제자유구역, 경제특구 등이 확산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법률수요가 확대될 것이므로 관련된 기관, 기업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의 민간·공공 법률수요에 부응하여 졸업생들이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및 관련 핵심산업, 평화의 섬 등과 관련된 도내·외의 기업·민간단체·공공기관으로 진출하여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체계도>



5.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전략

(1) 전략의 기본 틀

- 다양한 전공의 기초 위에서 전문적으로 법률이론 및 실무 교육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수립.
-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세계평화의 섬 추진에 따른 법률적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위해 이론과 실무를 연계하고, 특성화 전략을 수립·실천
- 법률상담센터 운영, 실무교육 및 실습과정과 연계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건전한 가치관·윤리관을 갖춘 법조인 양성.
- 교수법 등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개량하여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축적.
- 법학전문대학원이 갖추어야 할 물적·인적 시설과 교육지원체계 등을 확립함.

(2) 이론과 실무교육의 조화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단순한 이론교육에 그쳐서는 아니되며, 이론적 지식과 법률실무를 결합시키고 이를 통해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실무적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 2007년 8월 현재 전임교원 16명을 확보하였으며, 그 중 4명은 실무교원(미국변호사 1명 포함)으로 확보하였음. 아울러 2007년 10월까지 추가로 4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할 예정임. 또한 다양한 실무경험자들을 겸임교원, 초빙교원으로 활용하여,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결합시킬 예정임.

(3) 기본 법률과목에 대한 충실한 교육과 첨단·종합·특성화의 결합

- 기본 법률과목에 대해 충실한 교육을 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함. 특히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가진 입학생들을 3년이라는 단 시간내에 역량있는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 법률과목에 대한 충실한 교육이 필요함. 그와 함께 다양한 전공선택과목들을 개설하고, 첨단과목, 종합과목들을 적극 개설함으로써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고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것임.

(4) 특성화분야와 연계한 교과과정운용

- 교과과정에는 특성화관련 과목을 18개 과목 이상(54학점 이상)을 편성하고, 특성화연구시설 및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특성화와 관련된 기본이론 및 실무교육을 충실히 함. 그와 동시에 특성화 관련 교원, 국제법무 관련 실무 교원 등을 전임 또는 겸임교원으로 추가 확보하여, 특성화분야와 관련한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연수의 체제를 확보하여 운영할 것임.
- 특히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전략인 “국제법무” 분야를 전문박사 과정, 연구과정 등 각종 재교육의 기회에 적극 반영하여 졸업생 또는 법조인들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계속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운영할 예정임.

(5) 사회봉사 등을 통해 국가·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건전한 가치관·윤리관 함양

-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지식과 능력 외에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과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가질 수 있도록, 법조윤리 등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상담센터 운영, 실무교육 및 실습과정과 연계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건전한 가치관·윤리관을 함양하도록 할 것임.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

6. 추진체계

-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추진체계가 필요함.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을 위해 제주대학교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와 법정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추진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또한 범 제주도 차원의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공동위원장 : 제주대학교 총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구성되어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이후에는 엄정한 학사관리를 하여 교육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임. 또한 대학구성원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철저한 자체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육목표의 달성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교육과정 등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자체평가를 위해 학내 구성원들과 지역사회 등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임. 자체평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제주대학교 학칙에 근거를 신설하고, 자체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학칙의 하위규정으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규정’을 제정할 예정임.

자체평가는 최소한 2년에 1회 이상 수행할 것이며, 평가항목은 교육실적, 운영실적, 졸업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 및 취업실적, 지역사회 기여(사회봉사 등) 실적조직 및 시설관련 실적, 특성화관련 추진실적 등으로 구성될 것임.

II. 특성화 목표 및 전략

1. 수립과정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목표로서 세계화·전문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표방하고 있음. 이러한 교육목표와 관련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전략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성패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향후 경쟁력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함.

- 이에 2005년 12월 제주대학교 법학부에서는 특성화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성화전략 및 교육과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동 위원회는 법학부교수 4인 및 교무처 1인, 행정학과 학과장 등 총 6인으로 구성되었음.
- 동위원회는 특성화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및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6년 2월 17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범도민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이를 통하여, 동 위원회는 “국제법무”로의 특성화전략을 마련하였음.
- 또한 2007년 8월에는 학내·외를 대상으로 교수, 학생, 기업, 제주특별자치도청, 도의회, 기업, 시민단체·언론에 걸친 설문조사(360부 수거)를 실시하여 특성화 목표 수립을 위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검증절차를 밟았음. 교수, 대학생, 공무원, 도의회, 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언론 관계인사 3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분야로 국제법무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2%가 “적절” 또는 “매우 적절”이라고 응답하였음.

<표 4> 제주대학교 로스쿨 특성화 분야로 “국제법무” 설정에 대한 의견

구 분	빈도(명)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함	123	34.2
적절함	172	47.8
보통	52	14.4
적절하지 않음	9	2.5
전혀 적절하지 않음	4	1.1
합 계	360	100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

-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추진을 위한 중점 세부분야를 묻는 문항에는 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 관련분야, 특별자치도 법제연구분야, 국제투자·국제거래 일반, 중국 등 거래가 빈번한 국가의 법률, 평화·인권법 분야 순으로 응답함으로써 제주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연관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특성화 목표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국제법무”를 특성화목표로 수립하였음. 이는 국제화, 첨단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거점대학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대학교의 발전전략에 부응하는 것이며, 제주지역의 발전전략인 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세계평화의 섬과도 연계되는 특성화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방향으로 특성화목표를 수립한 것은, 세계화 추세에 따른 국제적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 이론적 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국제적, 국내적 법률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임. 특히 FTA체결이 증가할 예정이며, 중국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교역량의 증대, 자본자유화에 따른 투자유치 및 국외투자의 증대 등의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법조인의 양성이 국내외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

또한 인천, 광양, 부산·진해에서 추진되고 경제자유구역, 중국 상하이의 푸둥지구 등에서 추진중인 경제특구 등은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예정임. 이러한 경제자유구역, 경제특구에서는 타 지역과는 다른 법령의 적용, 외국어 기반의 생활환경 마련, 교육·의료의 특례 인정 등이 추진되고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기관이 설립·운영되게 되므로, 관련된 국내적·국제적 법률수요도 계속 증대될 수밖에 없음. 제주국제도시추진과 연계되어 양성된 국제법무 인력은 유사한 개념의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와 관련하여서도 가장 우수한 법률전문가들이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이러한 방향의 특성화 목표 설정은 제주지역의 발전방향인 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지역적 법률수요에도 부응하는 것임. 또한 현재 제주

대학교 법학부가 정부의 지방대학역량강화사업(NURI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국제자유도시 법무서비스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므로, 이미 상당부분 “국제법무서비스”의 특성화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 등에 기초하였음.

3. 특성화 체계도

▶ 특성화목표	국제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라는 시대적 추세와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지역환경에 부응하는 국제적 감각과 능력, 기본소양을 갖추고, 국제적 법률수요와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지역적 법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조인 양성 ○ 이는 국제화, 첨단화를 통한 동북아거점대학으로의 도약이라는 제주대학교의 발전전략에도 부응하는 것임



▶ 세부전략	충실한 기본소양 + 선택과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지역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제법무에 관한 기본소양을 충실히 쌓음. ○ 그와 동시에 지역환경과 대학여건을 감안하여 비교우위를 점할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세부전략을 추진함. ○ 세부적으로는, ①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국제투자, 국제거래 관련 법률수요의 급증에 대비한 국제투자·국제거래 분야, ② 최근 중국과의 거래, 투자유치, 관광 등의 활성화로 인한 법률수요를 고려한 중국법 관련 분야 ③ 세계적인 FTA의 확산과 자본·무역거래의 증가에 따른 외국법(미국, EU, 일본 등) 분야 ④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에 따른 관련 법률분야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 관련 분야(관광, IT, 의료, 청정1차산업 등) ⑥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됨에 따른 평화·인권법 분야에 집중함.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



▶실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에 반영(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등) ○ 연구소 특성화 등 인적·물적 기반 구축 ○ 지역사회, 외국대학, 외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	---

4. 세부실천전략

○ 세계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따른 국제적·국내적 법률수요에 부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라는 지역발전전략과 연계된 법률수요 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법무에 관한 기본지식과 실무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원확보가 필요함.

둘째, 지역환경과 대학여건을 감안하여 비교우위를 점할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세부전략을 추진함.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세부분야로, ①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경제자유구역 및 경제특구의 확산에 따른 국제투자, 국제거래 관련 법률수요의 급증에 대비한 국제투자·국제거래 분야, ② 최근 중국과의 거래, 투자유치, 관광 등의 활성화로 인한 법률수요를 고려한 중국법 관련 분야 ③ 세계적인 FTA의 확산과 자본·무역거래의 증가에 따른 외국법(미국, EU, 일본 등) 관련 분야 ④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 국내·외에서의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의 확산에 따른 관련 법률분야 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산업 관련 분야(관광, IT, 청정1차산업, 의료 등) ⑥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됨에 따른 평화·인권법 분야 등이 있음.

5. 특성화의 실현 방안

(1) 교육과정에 반영

○ 제주대학교 법학부는 이미 법학부 내에 “국제법무전공”을 신설하였으며, 국제법, 국제경제법, 국제인권법, 국제조직법, 국제형법, 국제투자법, 국제거래법, 국

제보험·운송법, 국제노동법, 국제환경법, 국제조세법, EU법, 국제범죄수사론, 국제법무사례연습, 국제민사소송법, 국제자유도시와 공법, 국제자유도시와 토지 사법, 중국통상법, 경제특구법 등을 교과과정에 편성하여 교육하고 있음.

- 향후 설립될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교과과정체제를 수정·보완하여, 특성화교육을 더욱 체계화함. 이를 위하여 교과과정에 특성화 교과목을 18과목, 총 54학점 이상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교과과정의 평가 및 지역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이를 더욱 확대할 예정임.
- 특성화 교과목으로는 국제인권법, 국제조직법, 국제자유도시와 공법, 국제자유도시와 사법, 국제거래법, 국제계약실무, 중국통상법, 국제투자법, 중국투자법, 국제경제법, 국제형법, 국제민사소송법, 국제토지거래법, 국제조세법, 국제노동법, 국제운송보험법, 국제해양법, 경제특구법의 18과목/54 학점을 교육과정에 편성할 예정임.
- 특성화 교과목으로 분류는 되지 않았지만, 국제법무의 기본소양을 충실히 쌓을 수 있도록, 공법계에 “국제법 총론”이, “기초 및 인접법학과목”에 영미법, EU법, 중국법 과목이 개설되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과목으로 관광법, 문화예술법, 과학기술과 법, 스포츠법, 의료법이 “민사법계” 과목으로 개설될 예정임.

(2) 연구소 특성화 등

- 특성화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과 정책연구소”를 설치하여 국제투자·거래법 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및국제자유도시법 연구센터, 4+1핵심산업관련법 연구센터, 중국법 연구센터, 외국법 연구센터, 평화인권법연구센터 등의 전문법센터를 둘 예정임. 전문법센터별로 센터장과 1-2명의 교수 및 유급조교를 두고, 2년차 이후 학생들로 하여금 특성화교육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임.
- 또한 졸업생 및 공무원 등의 재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성화 영역에 연구과정을 설치하여, 전문법센터별 책임교수들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

(3) 외부기관과의 연계

- “국제법무”의 특성화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학내뿐만 지역사회, 외국대학,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모색함.
- 지역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은행, 각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기업, 의료기관, 직능별 협회 등과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또한 중국, 일본, 미국 등의 제휴대학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특성화 교육·연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의 법률사무소, 제주지방변호사회 및 여러 협력기관 등과 연계하여 국제투자, 국제거래, 중국관련 법무,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법무, 평화인권법 등에 관한 실무교육 및 연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아울러 법조 직역의 진출을 다양화하고 졸업생들의 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성화와 관련된 외부기관(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내외투자자, 도내 기업, 직능별 협회 등)과도 실습과정에 있어서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III. 교육과정

1. 개설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특성화목표 포함)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향후 학생들의 졸업후 진로를 고려하여 이와 연계된 커리큘럼 등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교육과정 관련 법조항은 아래와 같음(요약).

법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 과정을 두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과정을 둘 수 있고,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하며,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법시행령 제10조(학위) ---석사 및 박사학위는 전문학위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법 제19조(학점) ①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②③이 법에 의한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습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11조(학점)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점”이라 함은 90 학점을 말한다.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15학점 이하로 한다.

법 제20조(교육과정) ①법학전문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이념과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시행령 제12조(교육과정) ①법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에는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조윤리
2. 법률정보의 조사
3.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③법학전문대학원은 제2항 제5호의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결국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립목적, 교육이념과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고 학생들의 취업후 진로, 제주대학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

교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교원과 교육시설, 재정상태, 학생정원), 특성화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제주대학교도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이를 학칙, 요람 등에 적절히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2.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정의 기본 체계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통해 일정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차 직역별 실무연수를 통해 실무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기본 법학 과목을 토대로 삼고 기초법학 과목과 인접과목, 전문법학과목, 실무기초과목을 유기적으로 조합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흐름도는 아래와 같음.



3. 교육과정의 구체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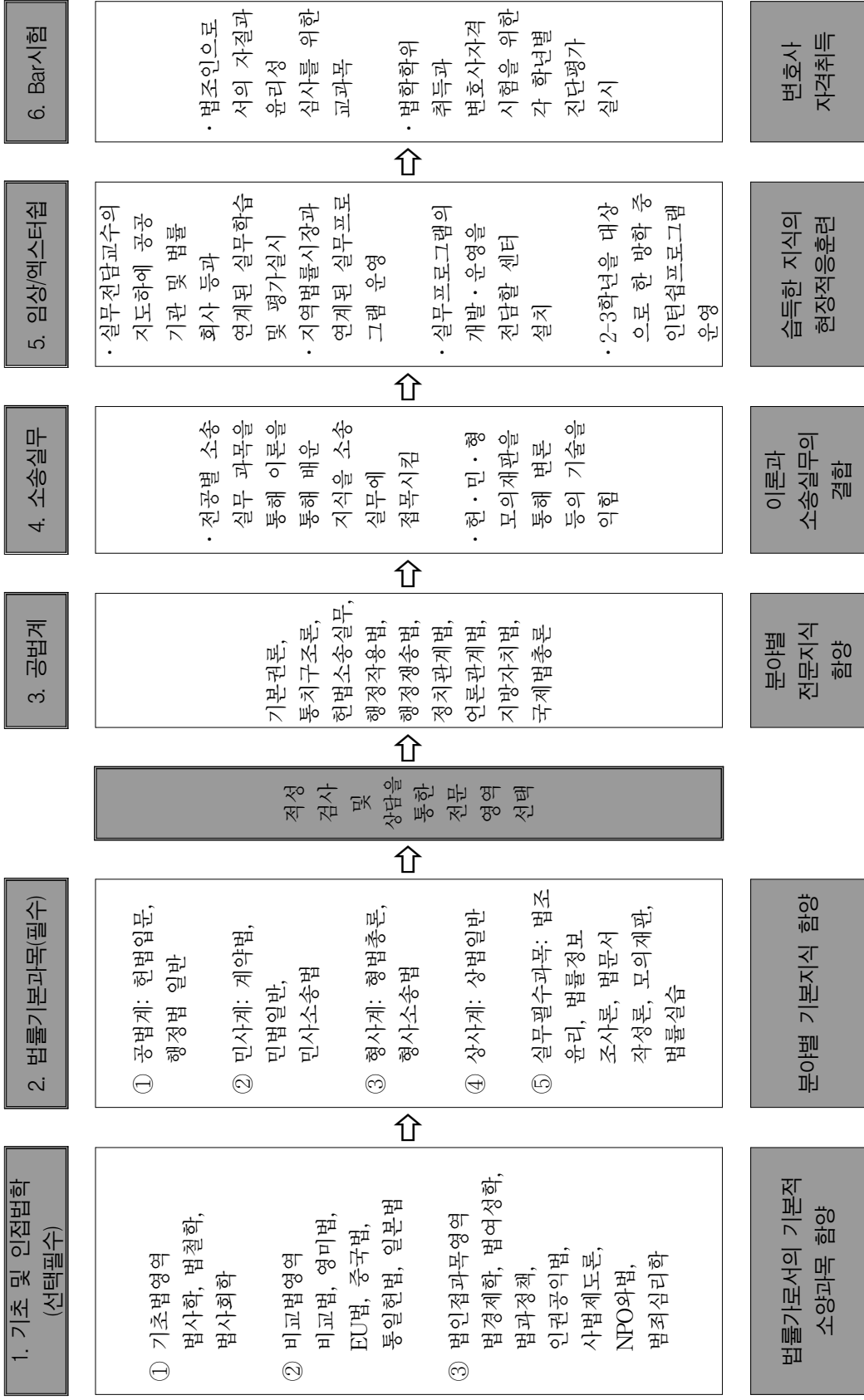
- 앞서 수립한 교육목표 및 특성화목표를 반영하고, 위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흐름도에 따라 학생들의 전공을 민사, 형사, 공법, 상사 및 사회, 특성화(국제법무)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기본 교육과정 이수체계도와 각 전공별 이수체계도를 마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별, 분야별, 교육단계별 로드맵을 구성하였음(아래 <표 5> 전공별 교육과정 이수체계도 참조).

<표 5> 교육과정 이수체계도

[교과과정 이수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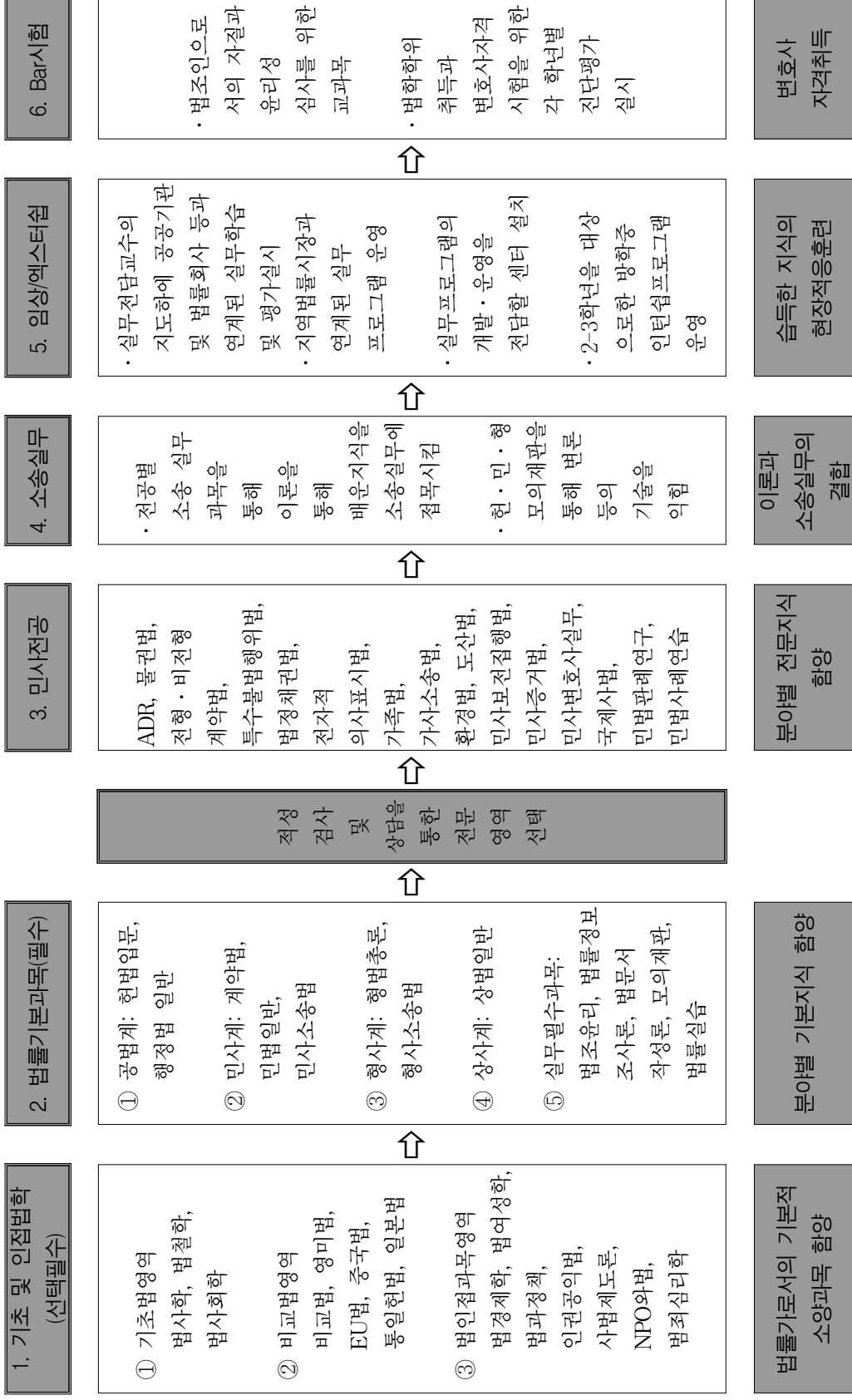
<p>1. 기초 및 인접법학 (선택필수)</p> <p>① 기초범영역 법사학, 법철학, 법사회학</p> <p>② 비교범영역 비교법, 영미법, EU법, 중국법, 통일헌법, 일본법</p> <p>③ 법인접과목영역 법경제학, 범여성학, 법과정제, 인권공의법, 사법제도론, NPO의 법, 범죄심리학</p>	<p>2. 법률기본과목(필수)</p> <p>① 공법계: 헌법입문, 행정법 일반</p> <p>② 민사계: 계약법, 민법일반, 민사소송법</p> <p>③ 형사계: 형법총론, 형사소송법</p> <p>④ 상사계: 상법일반</p> <p>⑤ 실무필수과목: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론, 법문서작 성론, 모의제관, 법률실습</p>	<p>적성 검사 및 상단을 통한 전문 영역 선택</p>	<p>3. 법률심화과목</p> <p>① 일반과목: 민사법계열(16) 공법계열(9), 형사법계열(8), 상사법계열(22)</p> <p>② 특성화과목 (18과목)</p> <p>③ 첨단과목 (5과목)</p> <p>④ 종합과목 (6과목)</p>	<p>4. 소송실무</p> <p>· 전공별 소송 실무과목을 통해 이론을 통해 배운 지식을 소송 실무에 접목시킴</p> <p>· 헌·민·형 모의제관을 통해 변론 등의 기술을 익힘</p>	<p>5. 임상/엑스터십</p> <p>· 실무진담교수의 지도하에 공공 기관 및 법률 회사 등과 연계 된 실무학습 및 평가실시</p> <p>· 지역법률시장과 연계된 실무프로 그램 운영</p> <p>· 실무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전담할 센터 설치</p> <p>· 2-3학년을 대상 으로 한 병학중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p>	<p>6. Bar시험</p> <p>· 법조인으로 서의 자질과 윤리성 심사를 위한 교과목</p> <p>· 법학학위 취득과 변호사자격 시험을 위한 각 학년별 진단평가 실시</p>	<p>법률가로서의 기본적 소양과목 함양</p>	<p>분야별 기본지식 함양</p>	<p>분야별 전문지식 함양</p>	<p>이론과 소송 실무의 결합</p>	<p>습득한 지식의 현장적응훈련</p>	<p>변호사 자격취득</p>
--	---	--	--	--	---	---	-------------------------------	--------------------	------------------------	--------------------------	---------------------------	---------------------

[공법계 이수체계도]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

[민사전공과정 이수체계도]



[상사법 · 사회법계 이수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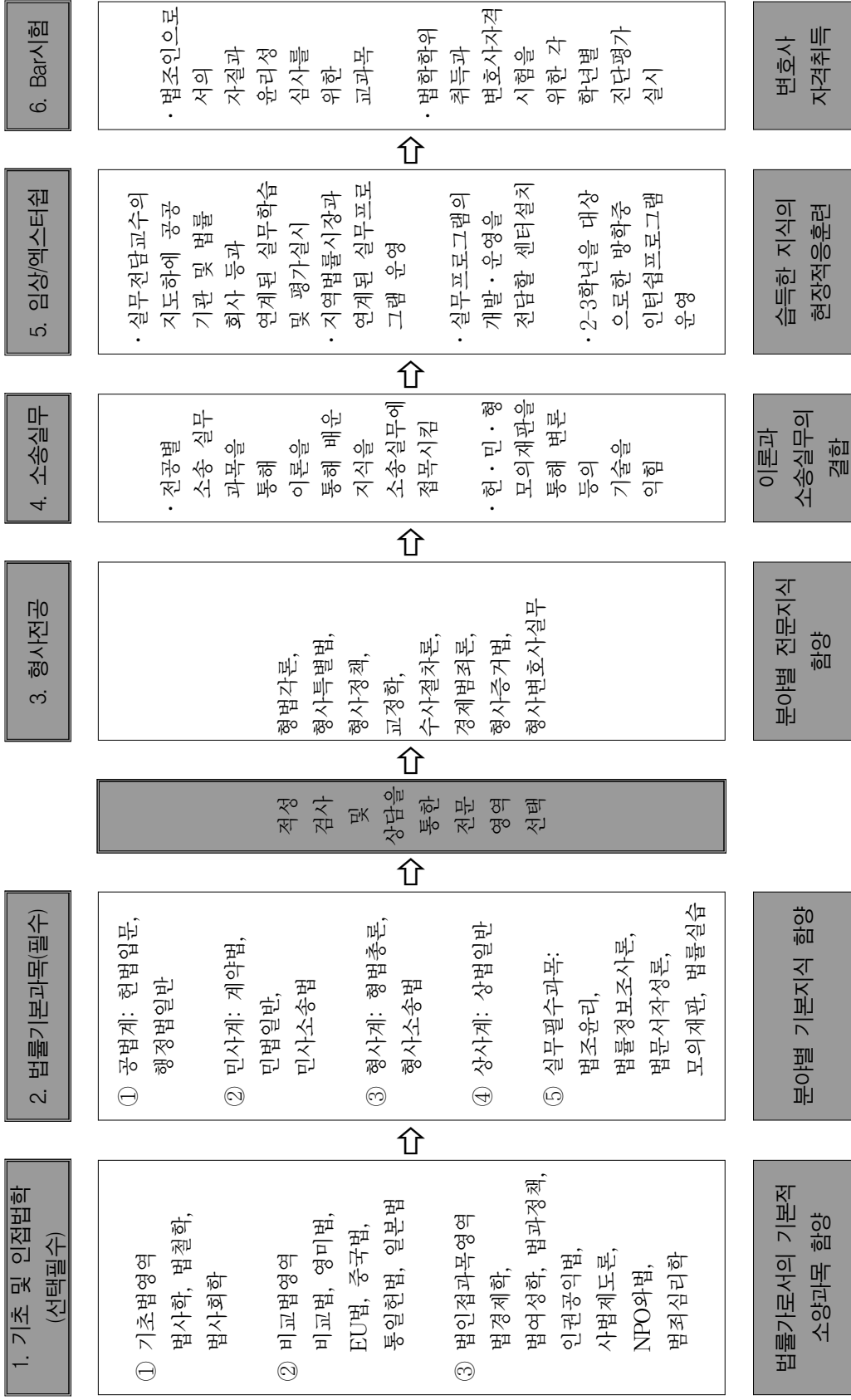
<p>1. 기초 및 인접법학 (선택필수)</p>	<p>① 기초법영역 법사학, 법철학, 법사회학</p> <p>② 비교법영역 비교법, 영미법, EU법, 중국법, 통일헌법, 일본법</p> <p>③ 법인접과목영역 법경제학, 법여성학, 법과정책, 인권공익법, 사법제도론, NPO와법, 범죄심리학</p>	<p>2. 법률기초과목(필수)</p>	<p>① 공법계: 헌법입문, 행정법 일반</p> <p>② 민사계: 계약법, 민법일반, 민사소송법</p> <p>③ 형사계: 형법총론, 형사소송법</p> <p>④ 상사계: 상법일반</p> <p>⑤ 실무필수과목: 법조윤리, 법률정보 조사론, 법문서 작성론, 모의재판, 법률실습</p>	<p>작성 검사 및 상담을 통한 전문 영역 선택</p>	<p>3. 상사법 · 사회법계</p>	<p>회사법, 보험해상법, 유가증권법, 증권 거래법, 기업법실무, 전자거래법, 상사 중재법, 금융거래법, 공정거래법, 소비자 보호법, 노동보호법, 노동단체법, 사회 보장법, 노동법 실무,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디자인법, 조세법총론, 조세소송법, 소득세·상속세법, 법인세·부가가치세법, 부정경쟁방지법</p>	<p>4. 소송실무</p>	<p>· 진공별 소송 실무 과목을 통해 이론을 통해 배운 지식을 소송실무에 적용시킴</p> <p>· 헌 · 민 · 형 모의재판을 통해 변론 등의 기술을 익힘</p>	<p>5. 임상/엑스터십</p>	<p>· 실무전담교수의 지도하에 공공 기관 및 법률 회사 등과 연계된 실무학습 및 평가실시</p> <p>· 지역법률시장과 연계된 실무프로 그램 운영</p> <p>· 실무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을 전담할 센터설치</p> <p>· 2-3학년을 대상 으로한 방학중 인턴십프로그램 운영</p>	<p>6. Bar시험</p>	<p>· 법조인으로 서의 자질과 윤리성 심사를 위한 교과목</p> <p>· 법학학위 취득과 변호사자격 시험을 위한 각 학년별 진단평가 실시</p>	<p>법률가로서의 기본적 소양과목 함양</p>	<p>분야별 기본지식 함양</p>	<p>분야별 전문지식 함양</p>	<p>이론과 소송실무의 결합</p>	<p>습득한 지식의 현장적응훈련</p>	<p>변호사 자격취득</p>
--------------------------------	--	----------------------	---	--	----------------------	---	----------------	---	-------------------	---	-----------------	---	-------------------------------	--------------------	------------------------	-----------------------------	---------------------------	---------------------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

[특성화과정 이수체계도]

<p>1. 기초 및 인접법학 (선택필수)</p>	<p>① 기초범영역 법사학, 범철학, 범사회학</p> <p>② 비교법영역 비교법, 영미법, EU법, 중국법, 통일헌법, 일본법</p> <p>③ 범인접과목영역 법경제학, 범여성학, 범과정학, 인권공의법, 사법제도론, NPO와법, 범최심리학</p>	<p>2. 법률기본과목(필수)</p>	<p>① 공법계: 헌법입문, 행정법일반</p> <p>② 민사계: 계약법, 민법일반, 민사소송법</p> <p>③ 형사계: 형법총론, 형사소송법</p> <p>④ 상사계: 상법일반</p> <p>⑤ 실무필수과목: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론, 법문서작성론, 모의재판, 법률실습</p>	<p>직성 검사 및 상담을 통한 전문 영역 선택</p>	<p>3. 특성화과목군</p>	<p>국제인권법, 국제 조직법, 국제자유 도시와 공법, 국제자유도시와 사법, 국제거래법, 국제계약실무, 중국통상법, 국제투자법, 중국투자법, 국제경제법, 국제형법, 국제민사소송법, 국제토지거래법, 국제조세법, 국제노동법, 국제운송보험법, 경제특구법, 국제해양법</p>	<p>4. 소송실무</p>	<p>· 전공별 소송 실무 과목을 통해 이론을 통해 배운 지식을 소송실무에 접목시킴</p> <p>· 헌·민·형 모의재판을 통해 변론 등의 기술을 익힘</p>	<p>이론과 소송실무의 결합</p>	<p>5. 임상/엑스터십</p>	<p>· 실무진담교수의 지도하에 공공 기관 및 법률 회사 등과 연계된 실무학습 및 평가 실시</p> <p>· 지역법률시장과 연계된 실무프로 그램 운영</p> <p>· 실무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전담할 센터설치</p> <p>· 2-3학년을 대상 으로 한 방학중 인턴십프로그램 운영</p>	<p>습득한 지식의 현장적응훈련</p>	<p>6. Bar시험</p>	<p>· 법조인으로 서의 자질과 윤리성 심사를 위한 교과목</p> <p>· 법학학위 취득과 변호사자격 시험을 위한 각 학년별 진단평가 실시</p>	<p>변호사 자격취득</p>

[형사과정 이수체계도]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

○ 법 시행령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에 필요한 필수 이수학점은 90학점 이상이면 되며, 그 상한은 각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그에 따라 졸업 이수 학점은 90학점 이상으로 함.

○ 법학 학사 학위 취득자 및 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점 취득자에 대하여는 15학점 이내에서 학점취득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은 석사과정이고, 타 대학원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최소한 종합시험에 통과해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법령상 필수과목은 35학점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무기초과목 중 법조운리는 3학점, 나머지 4과목은 각 2학점으로 필수과목중 실무기초과목의 학점은 11학점으로 함.

나머지 24학점은 법률기본과목 8과목으로 하되, 외국 로스쿨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예 등을 참고하여 선정함. 소송법을 제외한 각 과목은 입문 정도(법학 이수자에게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미수자와 이수자를 구별하여 분반하되 심화학습을 교수할 필요가 있을 것임)로 하므로, 헌법, 형법과 행정법은 총론, 민법과 상법은 총칙, 계약법은 채권총론 수준임.

○ 『심사기준 연구』에서는 선택과목의 학점 수가 230학점 이상이어야 만점이고,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를 의식한 과목 또는 종합적인 과목이 5과목 이상 개설되어야 하며, 시대와 환경에 적응하는 새로운 내용의 과목(소위 첨단과목)이 5과목 이상 개설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선택과목을 개설함에 있어서 기초법학, 인접과목, 첨단과목 등에 걸쳐 과목을 적절하게 개설하고, 학생들이 어느 분야에 과도하게 편중하여 이수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며, 특히 기본 6법 중심에서 벗어난 새롭고 독창적인 과목을 개설하고, 아무 과목이나 선택하여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선택군 내에서 일정 수의 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등 체계화 하였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양한 선택과목을 많이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원의 수가 많이 필요하나,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부의 교원은 10월말 충원예정인 인원까지 포함하여 20명 수준이므로 선택과목의 개설에 있어서 현실적인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음.

그리하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선택과목과 관련하여,

① 기초 및 인접법학과목(16과목),

- ② 전문과목
 - 공법계 9과목
 - 형사법계 8과목
 - 민사법계 16과목
 - 상사·사회법계 22과목 등 포함 55과목
 - ③ 특성화(국제법무)계 18과목
 - ④ 첨단과목 5과목: 관광법, 문화예술법, 과학기술과 법, 스포츠법, 의료법
 - ⑤ 종합과목 6과목: 헌법, 국제법, 행정법, 형사법, 가족법, 상사법 세미나 등의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들은 선택과목 중 기초 및 인접법학 과목은 9학점 이상 15학점까지, 첨단 및 종합과목은 각 6학점 이상 15학점까지, 특성화 과목은 1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 아래와 같은 교과목 일람표는 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 연구』에서 요구하는 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부 전임교원의 인원, 교수능력, 강의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한 초안임.

<표 6> 교과목 일람

구분		교과목명	
필수 과목	법률기본과목	헌법입문, 민법일반, 형법총론, 상법일반, 계약법, 행정법일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8)	
	실무기초과목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론, 법문서작성론, 모의재판, 법률실습(5)	
선택 과목	기초 및 인접법학과목	법사회학, 법철학, 법경제학, 영미법, EU법, 법여성학, 법사학, 사법제도론, 중국법, 인권과 공익법, NPO와 법, 법과정제, 비교법, 통일헌법, 일본법, 범죄심리학(16)	
	전문 과목	공법계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헌법소송실무, 행정작용법, 행정쟁송법, 정치관계법, 언론관계법, 지방자치법, 국제법총론(9)
		형법계	형법각론, 형사특별법, 형사정책, 교정학, 수사절차론, 경제범죄론, 형사증거법, 형사변호사실무(8)
		민사 법계	ADR, 물권법, 전형·비전형계약법, 특수불법행위법, 법정채권법, 민법판례연구, 민법사례연습, 전자적의사표시법, 가족법, 가사소송법, 환경법, 도산법, 민사보전집행법, 민사증거법, 민사변호사실무, 국제사법 (16)
	상사· 사회법계	회사법, 보험해상법, 유가증권법, 증권거래법, 기업법실무, 전자거래법, 상사중재법, 금융거래법,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노동보호법, 노동단체법, 사회보장법, 노동법 실무,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디자인법, 조세법총론, 조세소송법, 소득세·상속세법, 법인세·부가가치세법, 부정경쟁방지법(22)	
	첨단과목	스포츠법, 관광법, 의료법, 문화예술법, 과학기술과 법(5)	
	종합과목	형사법세미나, 행정법세미나, 헌법세미나, 상사법세미나, 가족법세미나, 국제법세미나(6)	
특성화법계	국제인권법, 국제조직법, 국제자유도시와 공법, 국제자유도시와 사법, 국제거래법, 국제계약실무, 중국통상법, 국제투자법, 중국투자법, 국제경제법, 국제형법, 국제민사소송법, 국제토지거래법, 국제조세법, 국제노동법, 국제운송보험법, 경제특구법, 국제해양법(18)		

- 위와 같이 교과목을 개설하기 위하여는, 향후 교원충원이 필요함. 향후 실무교원, 기초법분야, 공법분야, 형사법분야, 첨단과목 관련 분야, 상사·조세법 분야, 특성화법 관련 분야 등에서 최소 10명, 최대 15명의 교원충원이 필요할 것임.

IV. 입학전형 · 학생복지

1. 입학전형

-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법 제22조(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로 한다.

제23조(학생선발)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적성시험의 시행) ① 적성시험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적성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시험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정기관에 대하여 적성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적성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지정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적성시험 응시수수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적성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

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행령안

제13조(입학전형구분)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전형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제14조(입학전형의 수립·공포)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학생 선발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1.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방안
2. 학사학위과정 성적,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 결과 및 외국어능력 등 입학전형자료의 활용 방법
3.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선발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

-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입학전형의 기초자료로는 학부성적, 외국어능력, 적성시험이 기본자료로 활용되어야 하고, 면접점수와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이 추가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임.

입학전형에 있어서 학부성적, 적성시험, 외국어능력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음.

- 앞으로 각 전형요소들의 반영비중 등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정한 지침이 정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지침제정 여부 등을 감안하여 비중을 정해가면 될 것임.

- 한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으로 우선 5% 정도를 배려하도록 한다는 것이 『심사기준 연구』의 내용임. 향후 이 부분에 관하여 인가심사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되는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전형 자체는 유지될 것임.

사회적 취약계층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해당될 수 있음.

- 법령에 의하면 타 대학출신자 쿼터가 3분의1 이상 의무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심사기준 연구』에서는 타대학출신자 쿼터를 50% 이상 부여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후에 인가심사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되는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제주대학교의 경우에도 타대학출신 쿼터는 인가심사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비법학사 쿼터도 3분의1 이상 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다양한 학풍과 다양한 배경의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로스쿨 설립취지를 적극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의 최종 인가심사기준의 내용을 보아야 할 것이나, 인가심사기준에서 허용이 된다면 제주대학교의 경우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에 발맞추어 “국제법무”를 그 특성화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입학전형 시 외국변호사, 국제법무 경력자(국제기구 근무경력자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를 일반전형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두며,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나 수험생의 이의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둘 예정임.

2. 학생복지

(1) 학생지도

-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인인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법률전문가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강의를 통하여 이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3년의 기간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그러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의 기간 동안 학생들이 자신의 구체적인 진로에 관하여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개인지도 및 진로지도 등의 학생지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기존의 학생지도체계를 개선·보완하여 다음의 개별발전지표에 따라 새로운 학생지도체계를 수립·운영함.

<개별 발전지표>

-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인트라넷 상 지도학생 관리시스템 구축
- 지도교수는 매학기 학생당 최소 5시간 이상을 개인지도시간으로 할애함
 - 지도교수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적정수를 임명함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

- 지도교수 1인당 10명 내외의 학생지도
- 지도방법은 개별면담 및 지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집단지도를 병행토록 함
- 지도교수의 학생지도활동에 대해서는 정규교육활동으로 인정하여, 강의시간·보수 및 업적 평가시에 적절히 반영하는 체제를 확립함
- 지도교수에 대해 다양한 선택가능성이 부여되어, 선정에 있어서 학생의 의사와 진로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함
- 지도교수의 지도활동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반영함

(2) 학생지도센터 설치·운영

- 현재 제주대학교에서는 대학본부차원의 학생복지과 및 직업능력개발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학생의 진로 및 취업지도를 담당하고 있고, 단과대학 차원에서는 행정실이 중심이 되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체제만으로는 전문화된 진로 및 취업지도를 요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진로 및 취업지도를 위하여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전문적인 학생지도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학생지도센터의 주요업무>

- 취업능력증진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 진로 및 취업상담
- 로펌 채용설명회개최
- 취업통계 조사
- 면접 및 인·적성 검사지도
- 현장 실무교육
- 학생활동 기록부 관리
- 심리상담
- 각종 심리검사 및 해석
- 신체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취업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학생복지

- 쾌적한 교육환경 및 학생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전용건물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학생 1인당 최저12㎡ 이상 최고 20㎡이 되도록 함.
-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에는 학생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마련함.
 - 신체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접근시설을 마련함

- 학생들의 학술활동,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과 예산을 마련함
- 보육시설 및 여성전용공간을 마련함

(4) 장학제도 및 선발계획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현행제도에 비하여 3년의 대학원 과정을 더 이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보수가 지급되는 기존의 사법연수원 제도에 비해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제도임.
이에, 장학금제도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기존의 장학제도와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제도는 가능한 한 생활보호대상 혹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적 우수 등 학업상의 성취도를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소화해 그치도록 하라는 것이 『심사기준 연구』의 입장임.
- 이에 장학금지급율을 등록금 전액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기준으로 재학생의 20%이상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연간 최소 6억원 이상의 장학재원(정원 100명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학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학금의 수혜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3주제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적·물적 시설 준비상황

이 효 연

제주대학교 기획처장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을 위한 주요 인가기준 검토

- 교원·시설·재정을 중심으로

이 효 연

I. 서론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분야 설치인사 심사 기준 연구」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사 심사를 위한 평가지표는 크게 ①교육목표 ② 학생복지, ③입학전형, ④ 교육과정, ⑤ 교원, ⑥ 교육시설, ⑦ 교육재정, ⑧ 관련학위과정, ⑨ 현황 및 실적 등 9개영역에 총 69개 평가항목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을 위하여 대학본부에서 준비가 필요한 교원확보 부분과 시설·재정부문을 중심으로 현재 준비진행사항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II. 교원

가. 교원의 확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면 편제완성연도 기준 교원1인당 10명 미만 학생수를 확보했을 경우 30점 만점으로 하고 있다. 제주대학교인 경우 현재 교원 16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말 채용을 목표로 4명을 추가 충원 중에 있다. 이 항목의 평가는 계획평가와 실적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설립인가 신청시에는 편제완성연도의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확보하여야 할 전임교원의 70%를 확보하여야 하며, 가인가 이후 개교시까지 나머지 30%의 교원을 충원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주대학교인 경우 입학정원을 100명으로 했을 경우 현재 25점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며, 입학정원을 80명으로 조정했을 경우에는 만점인 30점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나. 유급조교 확보

유급조교의 확보는 설치인가 기준상 전임교원대비 유급조교의 비율이 1:1이상이 되었을 경우 20점 만점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유급조교는 1년 이상의 고용기간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월 50만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항목은 계획평가사항으로 유급조교에게 지급할 급료의 재원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면 평가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우리대학교인 경우 20명 이상의 유급조교 확보계획을 수립할 경우 20점 만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III. 시 설

가. 필수시설의 확보

설치인가 기준상 필수시설은 학생 1인당 12m²이상을 확보했을 경우 3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필수 공통시설 공간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및 정보통신시설과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정하는 교육기본시설(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도서관, 학생회관)를 말하는 것으로, 입학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소 3,600m²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대학교는 시설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대학 1호관의 일부, 제2도서관,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의 일부공간 등 5,766m²를 확보하여 설립 신청시 기준 3점 만점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나, 잔여 학부생을 위한 강의 공간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고려할 경우 추가 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법학전문도서관

(1) 법학전문도서관의 설치

이 항목에서 말하는 법학도서관은 법학전문도서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실체를 갖춘 도서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불합격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과 교수들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독립성이 확보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대학교에는 현재 제2도서관을 법학전문도서관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9월에 법학관련 도서를 이전 완료하였으며, 현재 열람용 비품 및 사무용 비품 구입과 이전자료를 정리 중에 있으며, 11월 1일 개관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설립신청시 합격요건은 현재 갖추어졌

다고 평가된다.

(2) 열람석의 확보

설립인가 기준상 법학전문도서관의 열람석인 경우 학생정원의 70%를 확보토록 하고 있다. 즉 입학정원을 100명을 할 경우 열람석은 최소 210석을 확보해야 15점 만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학교인 경우 제2도서관을 법학전문도서관으로 전용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층에 열람석 216석 확보계획을 수립, 배치계획을 완료한 상태이다.

(3) 법학관련 도서의 확보

설립인가 기준상 법학전문도서관의 장서는 40,000권 이상을 확보했을 경우 2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주대학교인 경우 현재 법학관련 도서 27,416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13,000책의 법학관련 도서 추가 구입목록을 작성 완료한 상태로, 이 항목이 계획평가임을 감안할 때 설립 신청시 20점 만점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4) 법학도서의 내용과 질의 우수성

법학도서의 내용과 질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요소로 도서의 종수와 저널의 종수를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다. 설립인가 기준상 도서의 종수는 20,000종 이상 확보된 경우와 저널의 종수가 50종 이상 확보된 경우 10점 만점으로 하고 있다. 제주대학교인 경우 이미 법학관련 도서 종수 13,500종과 법학관련 저널은 23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치기준상 만점을 받기 위하여 법학관련 6,500종과 저널 27종을 추가 확보계획을 수립 완료한 상태에 있다. 이 항목이 계획평가임을 감안할 경우 설립신청시 10점 만점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5) 법학전문사서 확보 여부

법학전문도서관이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도서관의 인적, 물적 자원이 중요하며, 특히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사서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사서 확보여부에 대하여는 전문사서 확보 및 사서직원 확보를 평가요소로 하고 있으며 설립기준상 1급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직원이 확보될 경우 1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주대학교인 경우 제2도서관을 법학전문도서관으로 전환하면서 이미 1급 전문사서 1명을 배치하였으며, 법학전문도서관의 직원 2명 배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어 설립신청시 10점 만점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 모의법정

모의 법정인 경우 「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에 적합하며 실무교육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7점 만점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규모는 방청 좌석 수가 입학정원의 80%이상이 구비될 경우 5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입학 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80석규모의 모의법정 설치가 요구되어 지고 있다. 제주대학교인 경우 제2도서관 지하 144㎡를 80석 규모의 모의법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대시설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이 항목이 계획평가임을 감안할 때 12점 만점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라. 정보검색실

설립기준상 정보검색실은 학생들의 정보검색을 위하여 수용좌석이 입학정원대비 80%이상이 되었을 경우 7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주대학교인 경우 법학전문도서관 2층에 80석 규모의 정보검색실 배치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 있으며, 법정대학내 전산실 54석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입학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만점 요건인 80석 이상을 충족하고 있어 설립신청시 7점 만점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마. 인터넷 접속능력

설립기준상 인터넷 접속능력 평가를 위하여 유선 랜포트가 총정원 대비 90%이상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전역에서 무선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7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항목은 계획평가사항으로 제주대학교인 경우 이미 법정대학과 법학전문도서관으로 예정되어 있는 제2도서관 건물 전역에 대해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상황이며,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법정대학 및 제2도서관 건물에 대한 270개의 유선랜포트 설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입학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설립신청시 7점 만점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바. 대형강의공간의 확보

대형강의공간에 대하여 설립기준상 입학정원의 200%이상을 수용할 수 있거나 또는 200석 이상의 좌석을 갖춘 경우 7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주대학교는 법정대학 1호관 내에 있는 300석 규모의 중강당을 법학전문대학원 전용 대형강의실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평가에 대비하고 있어 설립신청시 7점 만점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사. 기숙사 시설

설립기준상 기숙사 시설은 학생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경우 2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입학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소 6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학생기숙사)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전용 기숙사를 위하여 50명 수용(남학생 13실 26명, 여학생 12실 24명) 공간과 전용독서실 2실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10명 이상 추가 확보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어 이 항목이 계획평가임을 감안할 때 설립신청시 20점 만점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IV. 재 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장학금 및 연구소 운영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설립기준에 의하면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받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비율이 재학생의 20%이상이 되었을 경우 40점 만점하고 있으며, 법학관련 연구소인 경우 재정은 연간 운용예산이 1억원 이상일 경우 25점 만점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총학생정원 300명(입학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재학생의 20%인 60명 이상에 대한 장학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연 등록금을 1천만원으로 정했을 경우 6억원이 소요되며, 또한 연구소 연운영경비 1억원을 더했을 경우 연간 총 7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는 대학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하여 지자체 및 여러 유관기관과 기업체로부터의 외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제주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외부지원을 위하여 이미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아울러 유치위원회내 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한 MOU체결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4주제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에 따른 제주지역의
환경변화

고 호 성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에 따른 제주지역의 환경변화

고 호 성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I. 문제의 제기

-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새로 도입되게 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간, 지역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 대학으로서는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쟁에 뛰어들었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지역 국회의원, 지역 경제·사회단체 등 지역사회 역량 역시도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이제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어떠한 위상을 갖게 될 것인지 아직 유동적인 점도 없지 않지만, 이 제도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로스쿨이 미국사회에서 지니고 있는 위상을 비교해 생각해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이 단지 대학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예상과 기대, 말하자면 법학전문대학원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토론의 편의를 위하여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 이 문제에 대한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토론에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두 가지의 관심방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 대학으로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지역사회와 역량을 통합하여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고 유치를 위한 정치적, 정책적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데 우선적 관심을 가질 것이고, 지역사회로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지역발전의 추진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특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대학원이 되도록 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다.

- 이러한 두 가지 관심방향은 상호보완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고 또 그것이 지역특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이 긴요하고, 다른 한편 지역사회를 얻기 위해서는 대학측으로서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지역특화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지역발전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지역대학·산업체·연구기관·자치단체 등의 긴밀한 협력 및 역량통합을 통한 ‘클러스터 형성전략’이 중요시되고 있는 이 때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및 설립이라는 사안을 통하여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사회단체 등 지역 역량 간의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 법학전문대학원 유치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1. 최소효과 시나리오

-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치, 설립되는 경우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함에 있어, 기존의 법학교육 및 법조인(변호사)의 기능과 위상이라는 전제 위에서 그 영향을 생각해 보는 것을 ‘최소효과 시나리오’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예상과 기대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 기존의 법학교육과 법조인(변호사)의 기능과 위상은 일반적으로 사법, 다른 말로는 재판과 관련된 법무 서비스인, 이른바 ‘송무서비스’를 중심으로, 더 정확하게는 ‘송무서비스’에 한정되어 파악되어 왔다.
-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체제가 사법시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학과에 진학하는 것은 사법시험을 준비하여 재판관련 서비스인 ‘송무서비스’를 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법학교육의 내용 역시도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이른바 ‘법해석학’(재판학적 법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 법학교육과 법조인(변호사)의 기능과 위상을 이런 관점에 한정하여 파악한다

하여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지역 내로 유치되는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상당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1) 법조인(변호사) 배출기회 확보

- 기존의 법학교육/사법시스템 내에서 법조인(변호사) 배출기회는 사실상 서울지역에 편향되게 집중되어 있었다. 수도권 중심으로 서열화된 대학 선호도 구조로 말미암아 지방대학으로서는 사실상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제주대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생을 중심으로 3년에 1명 정도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게 되면, 이러한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과, 사법시험법을 대체하여 새로 만들게 될 변호사시험법에서 연간 변호사 배출정원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비율이 결정되게 되겠지만, 현재의 정책적 논의 상황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정원의 최소 80% 이상 정도에 변호사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추세이다.
- 이러한 내용에 따른다면, 예를 들어 입학정원 100명 규모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는 경우, 해마다 80명 정도의 변호사를 제주지역에서 배출하게 된다. 배출된 모든 변호사가 제주지역에서 활동하지는 않겠지만, 바로 그 때문에 제주에 연고를 가진 법조인이 전국 각지로 나아가 활동하게 된다.
- 이렇게 된다면, 부와 권력, 정보와 인맥이 지나치게 서울로 집중되어 있는, 왜곡된 우리나라 정치·경제적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경시키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이 점차적으로 겪게 될 소외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2)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 지금 대학 졸업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취업이 되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든, 아니라고 보든,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자격증이 부여되는 학과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대학 현실이다.
- 이 시대 젊은이들이 전문자유업에 대한 선망으로 말미암아,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폭증하여 인문/사회계 학과는 학과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중요한 논거로 들어져 오기도 했다.

-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미국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비법학 학부 졸업생에 대하여 대학원 과정으로 법학교육을 시켜서 변호사를 양성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인 만큼,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는 법학분야만이 아니라 인문/사회계 학과 뿐 아니라 자연/공학계 학과의 경쟁력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더구나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법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당해 학교 학부 졸업생에 대한 할당제를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은 계속 되겠지만 본교 학부 졸업생에 대한 할당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할당제가 시행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한 대학의 경쟁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 설령 강제 할당제가 시행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학부 졸업자는 그 관심도나 정보획득 능력에서 다른 대학 학부 졸업자보다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전체 경쟁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 지방대학의 입학 경쟁력 강화는 다양한 방향으로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항목을 나누어 서술하겠지만, 대학의 입학경쟁력 강화가 결국은 우수 연구자를 교수로 초빙하여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지역내 연구·개발(R&D) 역량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만은 여기에서 언급해 두고 싶다.

3) 지역 교육산업 발전

- 교육을 산업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학 자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산업적 효과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
- 제주지역과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미국의 일부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우수한 대학 하나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운용되는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에 갈 때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할 수만 있다면, 서울은 얼마나 여유로운 국제적 역사, 문화, 정치, 경제도시가 되고, 지방은 유치된 대학을 기반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사회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첨단산업을 모색하면서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을 해 보곤 한다.

- 수도권 대학을 지방으로 강제 분산시키지 못할 것이라면, 지방대학의 입학 경쟁력을 대폭 확대시킴으로써 그러한 꿈을 실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 경쟁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법학전문대학원을 지방 중심으로 인가해야 하는 필요성이 바로 이런 점에 있다.
- 제주지역의 경우, 특별자치도 제도의 채택을 통하여 발전된 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육, 의료산업이라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려는 산업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치가 제주도의 이런 산업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임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4) 지역인재 유출 방지

- 지역발전 이론가들이 오래 전부터 크게 주목하여 온 문제 중의 하나가 ‘지역인재 유출’(brain drain)이다. 지역인재 유출이 계속되는 한, 지역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지역인재 유출’(brain drain) 문제는 지식기반경제가 경제의 중심축으로 변화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혁명, 이른바 지식·정보화혁명의 시대에 지역발전을 위한 최우선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법학전문대학원 유치가 단순히 법학분야의 대학 경쟁력 강화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과를 포함하는 대학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치되는 경우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는 더욱 상승될 수밖에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외부의 인재를 유입하는 효과까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 이 점과 관련하여,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학생 한 명을 외부에 보내어 교육시키는 부담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클 수밖에 없다.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통하여 대학의 입학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자체 내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지역경제의 유출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 특히 강조해 두고 싶은 점은, 외부 기업유치의 최대 장애 중의 하나로 지역 교육인프라의 상대적 취약성이 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수한 대학이 지역 내에

있다면,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에 기업 이전을 꺼리는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치는 분명히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2. 최대효과 시나리오

- 최소효과 시나리오는 법학교육과 법조인(변호사)의 기능과 위상을 이른바 ‘송무 서비스’에 한정하여 파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기존의 인식과 실태를 혁명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 로스쿨의 기능과 위상을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을 대강 짐작해 볼 수 있다. 변호사 자격을 지닌 미국 로스쿨 졸업자들의 진로는 법원, 검찰 및 송무서비스 중심의 로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미국 로펌들이 우리 변호사 사무실처럼 재판관련 변론 활동만에 한정하여 기능하는 것도 아니다.
- 로스쿨 졸업자들이 경력상 로펌을 거치기도 하지만, 그들은 예를 들어, 합법화 되어 있는의회 로비스트로,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개방형 임용제라고 할 수 있는 폭 넓은 통로를 통하여 행정 각 부문으로, 국제기구로, 국제협상전문가로, 그리고 금융을 포함한 각종의 기업분야로, 인권·환경 등 시민단체로, 정치 분야로 진출해 나간다. 미국을 ‘변호사(lawyer)의 나라’라고 말하는 경우, 이런 구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법학교육의 내용도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법과대학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다. 사법과 송무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내용은 기존의 법률을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말하자면 ‘재판학적 법학’을 가르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입법, 행정, 사법 뿐 아니라 기업, 국제관계로까지 졸업자들이 진출하는 미국 로스쿨에서는 정책학적 내용과 재판학적 내용이 통합된, 말하자면 ‘정책학적 법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것이 미국 법학의 특징이고, 또 사회 전영역에 걸쳐 활약하고 있는 미국 로스쿨 졸업자들의 국제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 ‘정책학적 법학’을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그 법률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실질문제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미국 로스쿨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원과정으로 법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런 이유가 아니라면, 고비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법학교육을 대학원과정으로 변경시킬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 이 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인식에 기초해서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이, 사법분야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기존의 구조에 미치는 파괴력을 예상해 볼 수 있게 된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구조에 참여할 인적 네트워크 상의 기회가 극도로 제한되게 될 것이다.
-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법조계의 이해와 맞물려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 문제가 치열한 쟁점이 되고 있다. 총정원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별 배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지역적 이해를 떠나서라도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 문제는 과거의 이른바 ‘송무서비스’적 관점에서 벗어나 결정되도록 사회적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크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송무서비스’적 변호사 양성의 비용을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송무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다.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이 ‘송무서비스’의 범위를 넘어 입법, 행정을 포함하는 사회 각 부문으로 진출해 나가는 데는 우리나라의 현실적 구조상 어려움도 예상된다. 벌써부터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법조관련 전문직 부문이 동요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제는 거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이 기업 분야로 진출하는 데에는 교육내용만 보완되면 큰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도 행정, 국제분야 등으로 진출하는 데에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행정, 외무고시제도의 존치 여부와 개방형 임용제의 확대 여하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논란은 거듭되고 있고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되겠지만, 이미 큰 방향은 고시제도 폐지와 개방형 임용제 확대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 지금 여기에서의 관심은 ‘송무서비스’의 범위를 넘어 사회 각 분야의 정책관련 영역으로 졸업자들이 진출하게 될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치가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최대효과 시나리오’라고 부르기로 한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최대효과 시나리오는 정치, 행정, 경제, 국제관계, 시민사회 각 영역마다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몇 가지로 정리하는 힘들다. 앞에서 언급한 최소효과 시나리오에서 나타난 효과를 모두 포함하여 그 효과를 더욱 확

대시킬 것임은 물론이다.

○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측면만을 언급해 두기로 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 인프라 강화

○ 제주대학교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입학정원 100명 규모 정도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치되는 경우, 해마다 대략 80명 정도의 변호사가 지역 내에서 배출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으면 아마도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 그러나, 그 80명은 지금도 해마다 1,000명 규모에서 배출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앞으로 2,000명 이상으로는 사실상 여러 역학관계 때문에 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전국 변호사 배출숫자 중의 일부분일 뿐이다. 최소효과 시나리오에 의하여 설명한다고 하여도 그런 변호사들을 제주지역에서 배출하여 전국으로 진출시키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 또 한 가지는 최대효과 시나리오에 의하여 설명하자면, 이들 변호사들은 모두 현재의 변호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송무서비스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양한 학부전공을 기반으로 정책학적 법학교육을 받은 로스쿨 졸업자(변호사)들은, 기업·경제부문을 중심으로 행정, 국제관계, 시민사회단체 영역으로 다양하게 진출하여 사회 각 부문의 중견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특히 첨단산업분야에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제주지역 유치기업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치되면 이러한 경향이 비약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로 지역발전을 위한 각 부문의 인적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어 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의 최대효과라고 할 수 있다.

○ 오래 전부터 제주지역에서는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으로,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지역 국제화전략이 역점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늘 그 현실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고도의 전문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러한 전략추진에 제주지역은 얼마만한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러한 인적 인프라가 없

다면 전략추진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전략추진이 가능하다 하여도 지역 내 인력은 결국 핵심영역에서 소외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 제주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제화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우선은 그것을 실현시킬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자원을 집중하여야 한다. 국제화를 위한 인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지역국제화의 첩경이라는 것이다.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국제법무분야’를 특성화분야로 선정하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제주대학교에서는 전국 어느 법과대학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국제법무전공’을 이미 2001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고, 2004년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법무서비스인력양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재정지원사업인 누리(NURI)사업에 법학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현재 4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치되면, 국제화전략을 중심으로 제주지역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최고급전문인력을 지역내에서 양성할 수 있게 된다. 대학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역내 기업들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에 힘을 모아주셔야 할 진정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것은 단순히 제주대학교의 발전만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III. 결론을 대신하여

- 전국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과연 제주에 유치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를 가지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적 역량이 결집되기만 하다면 유치는 매우 낙관적이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특히 제주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치되어야 하는 법리적 당위성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 싶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하여 전국 각 대학, 특히 지방자치단체까지 유치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은, 근본적으로 대학 및 대학원 설치권한과 변호사자격 인정권한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만일에 지방정부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지역간 경쟁은 애초에 발생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모델로 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각 주(state)가 대학 설치와 변호사 자격부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권한에 기초하여 미국 로스쿨 및 변호사 양성기회는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연방제 국가이든 아니든, 우리나라와 비교 가능한 어느 나라를 살펴보아도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변호사 양성기회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 우리나라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간 균형배치의 기준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라야 한다.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대표하는 역사적, 실제적 정체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기 때문이다.
- 더구나 지방의회에서 조례라는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또 그 조례에 의한 자치행정이 더욱 확대·진전될 것이 예상되는 환경 속에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하나의 광역 자치단체에 최소한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지방분권의 세계적 추세에 어긋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마저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 지역발전을 위하여, 또한 제주지역 젊은이들의 꿈을 위하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및 설치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